

#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 1. 12 평창군수(건설과장)  
나. 회 부 일 자 : 1999. 3. 12  
다. 상 정 일 자 : 1999. 3. 12 제6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 제안이유

- '97. 9.11일자로 대통령령 제15480호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음식점·숙박시설 설치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를 일부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나.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등의 설치가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주변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등을 고려 군수가 제한
- 다. 숙박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허가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함.
- 라. 숙박업등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 토지형질 변경허가는 건축허가와 복합민원으로 처리

#### 4. 검토 의견

##### 가. 먼저 관계법을 검토하면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등의 설치는 준농림지역에서 제한하고 있으나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우려가 없다고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지역에는 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음.

나. 현재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일인 1997. 9.11일 이전에 농지전용, 건축허가등의 인허가 절차를 득한 것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준농림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신규설치에 대하여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한하고 있음.

다. 본 조례는 법에 근거하고 다른 시군의 형평성에 입각하여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추진중에 있는 국토 이용계획변경을 통한 개발계획수립은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조속히 수립·고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강원도의 준칙과 타시군 조례를 살펴보면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의 득과 실을 신중히 비교교량하여 분석  
·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인근시군조례제정추진현황

## □ 제정·미제정 시군현황

조례제정	미제정
6	12

## □ 시군별 추진현황 및 계획

시군별	조례제정여부(계획)	내용	비고
춘천시	미제정(6월)	○ 조례안 자료수집중	
원주시	미제정(6월)	○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활용계획	
강릉시	미제정(미정)		
동해시	미제정(미정)	○ 제정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계획	
태백시	미제정(7월)		
속초시	★제정	○ 심의위원회 운영	
삼척시	★제정	○ 심의위원회 운영	
홍천군	미제정(미정)		
횡성군	미제정(검토중)		
영월군	★제정	○ 심의위원회 운영	
정선군	미제정(3월)	○ 제정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계획	
철원군	미제정(6월)		
화천군	입법예고중		
양구군	★제정	○ 심의위원회 운영	
인제군	미제정(6월)		
고성군	★제정	○ 심의위원회 운영	
양양군	★제정	○ 심의위원회 운영	

##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 관한 조례시군별 허용지역비교표

관련법 시군별	심의위원회 설치여부	하천법 호소수질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하수도법 오수분뇨및축산 폐수처리법률 수도법	도로법	건축법	준보전임지	농업관련
강원도 (준칙안)	설치규정	하천과 호수로부터 일정거리이상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이 아닌 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역, 합병정화조가 설치지역, 상수도취수장 으로부터 5km이외	심의위원회 에서 판단 하는 일정 거리이상 지역	시장·군수 가제한하는 높이미만의 시설	산립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는지역	영농을 목적으로 보전 가치가 없는 지역
양양군	설치	"	"	상수도취수장 으로부터 4km이외	"	"	"	"
양구군	"	"	"	"	"	"	"	"
영월군	"	"	"	"	"	"	"	"
삼척시	"	"	"	"	"	"	"	"
고성군	"	하천과 호수로부터 상류 100m이상지역, 직할·준용하천 및 호수로부터 20m이외 지역, 하천미개수 구간은 계획선으로 부터 20m이상지역	"	"	국도, 지방 도, 군도 도로구역 경계선으로 부터 5미터 이외지역	"	"	"
속초시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	"
평창군	미설치예정	지방하천 및 준용 하천으로부터 40m이상지역 (호수수질관리법 에 대하여는 없음)	준칙 및 타시군 과동일	준칙 및 타시군 과동일	고속도로 및 철도: 50m이상 국·자방· 군도: 30m이상 (식품집객인 : 10m이상)	준칙 및 타시 군과동일	준칙 및 타시 군과동일	준칙 및 타시 과동일

관련법 시군별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문화재등	농어촌정비법	타 법률	관련법에의한 예외규정	심의위원회의기능	비고
강원도 (준칙안)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일정 거리 이상 지역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일정 거리 이상 지역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일정 거리 이상 지역	없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	없음	설치허용지의 및 시설의 종류, 규모, 경관등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	
양양군	"	"	"	농어촌 휴양 사업으로 수질 오염우려가 없는 지역	"	"	"	
양구군	"	"	"	없음	"	"	"	
영월군	"	"	"	"	"	"	"	
삼척시	"	"	"	"	"	"	"	
고성군	"	"	문화재의 주변으로부터 자연 경관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 지역	"	"	"	"	
속초시	없음	없음	없음	"	"	"	"	
평창군	지하수보전 구역 이외 지역	샘물 제한구역 이외 지역	문화재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	"	준칙 및 타시 군과동일	군수, 농·수축·임협장이 설치지정하는 판매장내 음식점, 도로 빙규정에 의한 휴게소내 음식점	기능규정 없음	

#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시군별	분야별	위촉내역	비고
속초시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활용	
양구군	-	○구성계획중	
고성군	<b>【위원장】</b> - 의회의원 - 지역주민 대표 - 환경·건설전문가 - 관계공무원	- 부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li> <li>- 읍면에서 1명씩 추천</li> <li>- 경동대 학교수 1인, 녹색사랑 회 1인, 건설업체대표 2인</li> <li>- 기획실장, 환경보호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정산림과장, 건설도시과장</li> </ul>	
양양군	<b>【부위원장】</b> <b>【위원장】</b> - 지역주민 대표 - 환경·건설전문가 - 관계공무원	- 부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양군 번영회장</li> <li>- 읍면별 1명씩 추천</li> <li>- 남대천보존회장, 요식업중앙회 양양지부장</li> <li>- 환경과장, 복지과장, 농림경제과장, 지역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li> </ul>	
영월군	<b>【부위원장】</b> <b>【위원장】</b> - 지역주민 대표 - 환경·건설전문가 - 관계공무원	- 군부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인</li> <li>- 영월공과대학장이 추천하는 교수 2인, 설계사무소 1인</li> <li>- 환경과장,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li> </ul>	
삼척시	<b>【위원장】</b> <b>【위원장】</b> - 지역주민 대표 - 환경·건설전문가 - 관계공무원	- 부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동별 의원 1인 (9인) 및 삼척산업대학교 건축공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 각 1인 (2인)</li> <li>- 건설도시국장, 환경복지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건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건설과장</li> </ul>	